

2022 시정권고 사례집

사회적 법익 침해

- 제1장 차별 금지
- 제2장 재난 보도
- 제3장 범죄 묘사
- 제4장 성관련 보도
- 제5장 자살 보도
- 제6장 마약 및 약물보도
- 제7장 폭력 묘사
- 제8장 충격·혐오감
- 제9장 기사형광고
- 제10장 기사 제목



제1장 차별 금지

사례. 15 장애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2-1113호
매 체 명	인터넷 아주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1월 2일
기사제목	국가돈은 ‘눈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

1. 보도내용

「국가돈은 ‘눈먼 돈?’...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 연내 70%까지 끌어올린다」의 제목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장애에 따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공표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에 빗대어 언급함으로써 장애를 부정적 비유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비록 유사한 경우에 해당 표현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용어가 있으며 언론의 사회적 책임 내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장애에 관한 차별이나 편견,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해당 표현의 사용을 삼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은 각종 보도준칙이나 자율강령 등에서 지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6 국적 차별 표현

의결번호	제2022-1111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9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여의도 불꽃축제 논란 중국인 같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1. 보도내용

「여의도 불꽃축제 논란 중국인 같다는 소리 나오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의 제목

「코로나19 사태에 열리지 않았던 ‘서울세계불꽃축제’가 3년 만에 열리면서 시민 100만여명이 여의도에 몰렸으나 일부 시민들의 의식이 중국인 못지 않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국적에 대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여의도 불꽃축제 참가자들의 시민의식 부족을 비판하면서 “중국인 같다”, “중국인 못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보도에 시민의식의 결여 내지 그로 인한 폐해를 공론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민에 대한 편견 내지 경멸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 국적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더욱 조장할 우려가 크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2장 재난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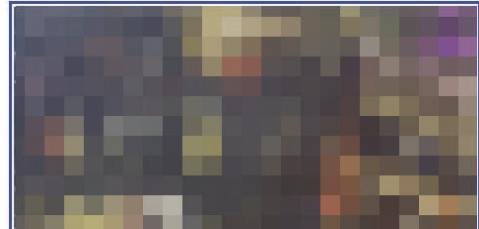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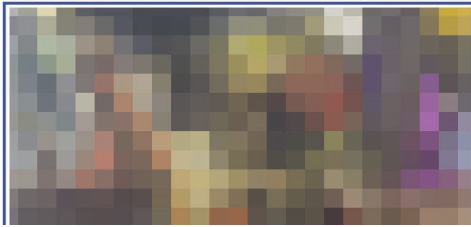
사례. 17 참상을 상세히 보도

의결번호	제2022-1200호
매 체 명	포스트쉐어(postshare)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30일 SNSPICK면
기사제목	실시간 이태원 압사사고 더 심각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1. 보도내용

「실시간 이태원 압사사고 더 심각한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참상이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된 부분을 식별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심폐소생 중인 압사피해자 등 생사를 오가는 불특정 다수의 신체가 드러난 현장 사진을 공표하였다.

비록 참사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일반 노상에서 응급조치를 받고 있던 희생자들의 열악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신체 일부를 드러낸 채 생사여부가 불분명한 희생자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통상적인 보도목적을 넘어 참상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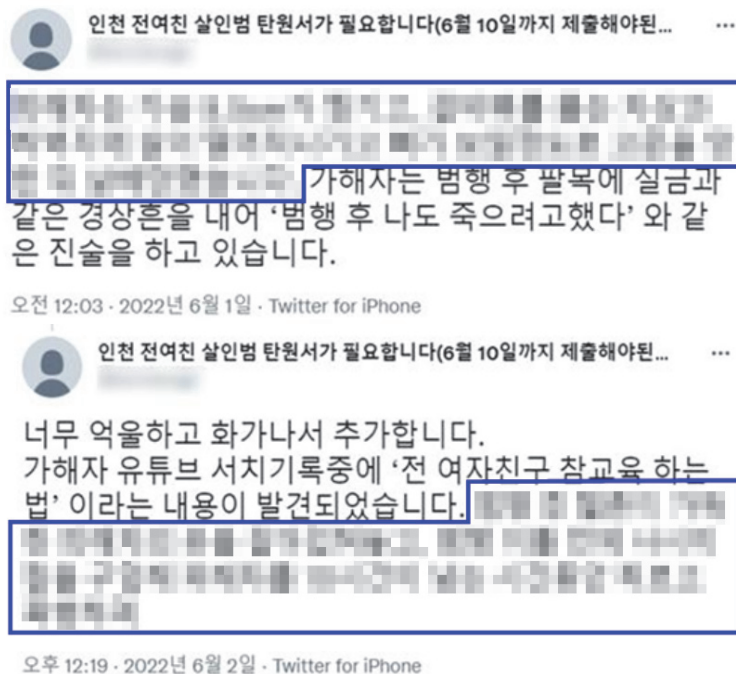
제3장 범죄 묘사

사례. 18 음란·포악·잔인 범죄 묘사

의결번호	제2022-675호
매 체 명	뉴스스(NEWSIS)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6월 4일 수도권면
기사제목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1. 보도내용

「“인천 전 여친 살인범 탄원서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측 호소」 제하의 사진



「인천 한 빌라에서 또래 여성을 흥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게시물이 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고 있다. (중략)

그러면서

다.

이어 “A씨의 유튜브 검색기록 중 ‘전 여자친구 참교육하는 법’이라는 내용이 발견됐다”면서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감형을 위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A씨가 짓값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가학적인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인천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포악하면서도 잔인한 범행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가해행위에 대한 일부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미디어를 통해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되는 것은 일반 독자에게 폭력에 대한 무감각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19 모방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 상세 설명

의결번호	제2022-765호
매 체 명	인터넷 광주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5일 사회면
기사제목	[사건 인사이트] '화살총 습격' 든 20대 습격에 병 뚫린 여수 봉산파출소

1. 보도내용

「20대 남성의 '화살총 습격'에 여수지역 파출소가 병 뚫렸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략) A씨는 별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지난 2월 [redacted]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redacted]

[redacted] 크기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한 남성이 화살총을 이용해 파출소를 습격했다가 검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총기인 '화살총'의 구조, 구입 및 개조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비록 사건·사고 보도의 특성상 범행도구에 대한 언급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심각성을 고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구입 방법 및 가격, 발사 방식, 범행에 용이하도록 개조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2조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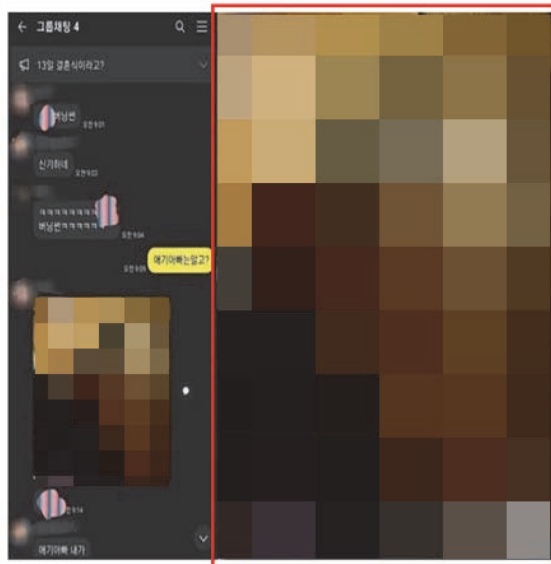
제4장 성관련 보도

사례. 20 성 관련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

의결번호	제2022-167호
매 체 명	e머니투데이(e money today)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월 16일 사회면
기사제목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1. 보도내용

“두 돌 아이 성희롱한 남편 친구, 성관계 암시 손모양까지 보냈다” 제하의 사진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성과 관련된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두 돌이 지난 여아에게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 모양 사진을 공표하였다.

해당 손 모양이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손 모양을 부각한 사진을 여과 없이 게시한 것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5장 자살보도

사례. 21 자살자 신원 공개

의결번호	제2022-779호
매 체 명	서울신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0일 9면
기사제목	故이예람 중사 부대서 女하사 또 숨진 채 발견

1. 보도내용

「성추행과 2차 가해 등으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예람 중사가 근무한 공군 부대에서 또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중략)

19일 공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충남 서산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 [REDACTED]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하사는 [REDACTED]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하사는 동료 부대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략)」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공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소속 부대(중대), 계급, 나이,

임관 시기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2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묘사

의결번호	제2022-819호
매 체 명	한국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14일 10면
기사제목	“물이 찼다”... 시속 35km로 바다 돌진 유나양 가족 3명 시신서 수면제 검출

1. 보도내용

「“물이 찼다”... 시속 35km로 바다 돌진 유나양 가족 3명 시신서 수면제 검출」의 제목

「전남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양 가족 차량 블랙박스에서

(중략)

경찰은 또 조양 가족 차량의 사고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분석 결과, 조양 부모가 극단적 선택을 짐작케 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했다.

(중략)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조양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5월31일0시40분에 완도항 인근 해역의 해수면 높이는 287cm로 만조 때였다.

조양 가족에 대한 최종 부검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예정이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향후 보도 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이 공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완도에서 실종된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 자살 실행 당시의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3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

의결번호	제2022-308호
매 체 명	인사이트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월 28일 정치·사회면
기사제목	1등급→3등급 떨어진 수험생, '성적 비관' 극단적 선택

1. 보도내용

「1등급→3등급 떨어진 수험생, '성적 비관' 극단적 선택」의 제목
「경기도 ○○에서 한 고등학생이 성적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 ○○신도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18)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후략)」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자살 동기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여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수원에서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을 전하면서 드러난 일부 사실로 자살 동기를 단정하고, 특히 이를 기사 제목에 사용하여 보도하였다.

이는 단순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인들로 유발되는 자살 사건에 대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유를 들어 자살의 동기를 단정하여 보도한 것으로,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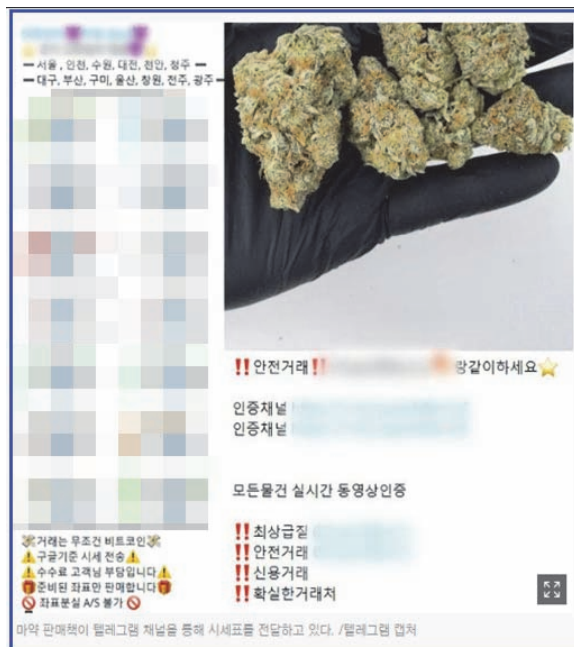
제6장 마약 및 약물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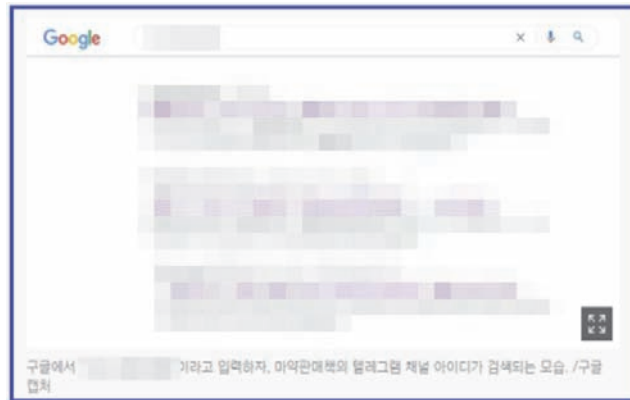
사례. 24 마약 명칭·가격·구입방법 등 보도

의결번호	제2022-1126호
매 체 명	조선비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2일 IT면
기사제목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

1. 보도내용

「“5초면 판매책 접선” 불법 마약 유통 경로 된 ‘구글·트위터·텔레그램’」 제하의 사진





「“
”

지난 1일 구글 검색에서 ‘텔레그램’, ‘텔레그램’을 검색해봤다. 를 뜻하는 마약 세계의 은어다. 엔터를 누르자 마약을 판매하겠다는 수십개의 트위터 멘션(글)이 검색됐다. 과거 오프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마약이 소셜미디어(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점차 온라인화 되는 것이다. (후략)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가격, 구입방법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 구입방법을 직접 거론하거나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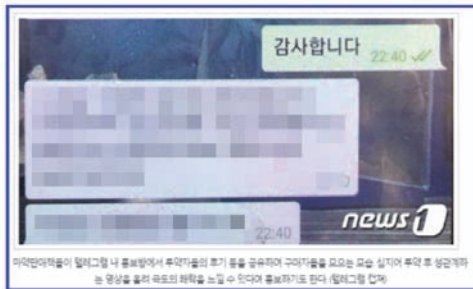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5 약물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 묘사

의결번호	제2022-1129호
매 체 명	뉴스1코리아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10월 14일 지방면
기사제목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1. 보도내용

「“빙글빙글 도네요”...구매에 후기까지 마약범죄 온상지 된 ‘SNS’」 제하의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판매자들은 홍보방에서 투약자

들의 후기 등을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모으고 있다. 심지어 투약 후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하는 등 SNS가 마약범죄의 온상지가 됐다는 지적이다. (중략)

텔레그램에서 판매책들은 투약자들의 후기를 공유하며 구매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REDACTED]

구매 방법도 쉬웠다. [REDACTED]

판매책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조언했다. [REDACTED]

(후략) 」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및 환각상태 등을 상세히 보도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를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상세히 보도하였다.

비록 위 기사에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표하는 것은 마약에 관한 잠재적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마약 사용의 동기를 유발하여 모방범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7장 폭력묘사

사례. 26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

의결번호	제2022-686호
매 체 명	위키투리(Wikitree)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6월 12일 라이프면
기사제목	불법 주차에 ‘문자’ 보냈더니…“경찰이 가스총 쏠 때까지 할 것” 황당 협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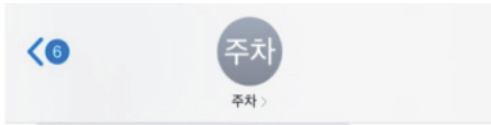
1. 보도내용

「대문 앞 불법 주차에 불만을 표하자 적반하장으로 황당한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뽀뿌’에는 ‘주차관련 욕설’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후략)」

※ 기사 내 링크 클릭 시 확인가능한 게시글 내 이미지



시정권고 사례집



나 모든거 다읽고살아 빛도많고 가
죽도 다 죽었어 더이상 살기싫어 너
집앞이니까 빨리와 야

내가 어떤 인지 보여줄게

숨어서 신고하지말고

하루종일 집에 올때까지 앞
에서 기다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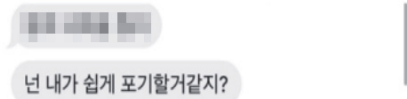


네 지금 이정도의 협박 문자는 징역
행인 거 아시길 바랍니다. 위에 문자
내용이 이정도까지 반응할건가요??

차 안 빼면 구청에 말한다는게

신고왜했어

신고하는거 으로나자
니



넌 내가 쉽게 포기할거같지?

내가 얼마나 집요한 인지 보
여줄게

난 아주 내가 꼭
보여줄게 너 집에 오는순간 보여줄
게

지 멈추지않을거야

어차피 난 이제 끝났어

내가 포기할거같지?

저는 이걸 토대로 저희 담당변호사
역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너한테 주차벌금 갚겠지만 나한테
큰돈이야

참고로 구청에 연락도 안했거 분명
위에 말했듯이 차 안 빼면 구청에 연
락한다했거요

신고했다면서

지금 구청에 신고한다는 것도 아니
고 차 안빼면 구청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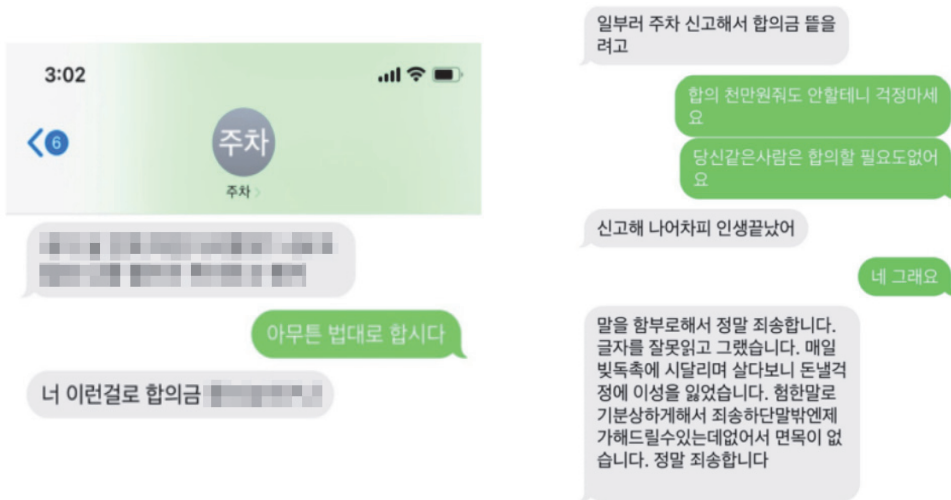
신고한다는 말 안보이나요?

분명 주차는 신고 안했고 살해 협박
으로 경찰 강력계에 고소장 내리갑

제1부
시정권고 현황

제2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 개인적 법익 침해
- 사회적 법익 침해

제3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원 링크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언어폭력이 필요 이상으로 묘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불법 주차 차량 주인에게 차를 빼 줄 것을 요구하자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링크를 통해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같이 링크 방식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 원문을 노출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이를 직접 기사에 인용하여 욕설 등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세히 묘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6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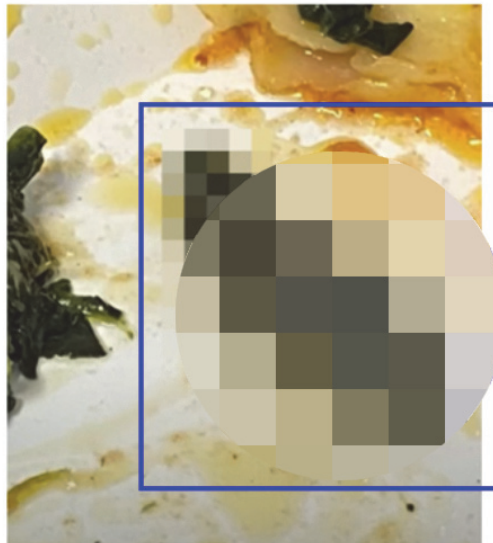
제8장 충격·혐오감

사례. 27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

의결번호	제2022-945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27일 국제일반면
기사제목	기내식서 뱀 머리 추정 물질이...승무원 식사 도중 발견

1. 보도내용

「기내식서 뱀 머리 추정 물질이...승무원 식사 도중 발견」 제하의 사진



[특위회 캡처]

※ 원 보도에는 일부내용만 비식별 처리되어,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지나친 충격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처리하거나 수정·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외국의 한 항공기 기내식에서 뱀 머리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진을 충분한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충격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17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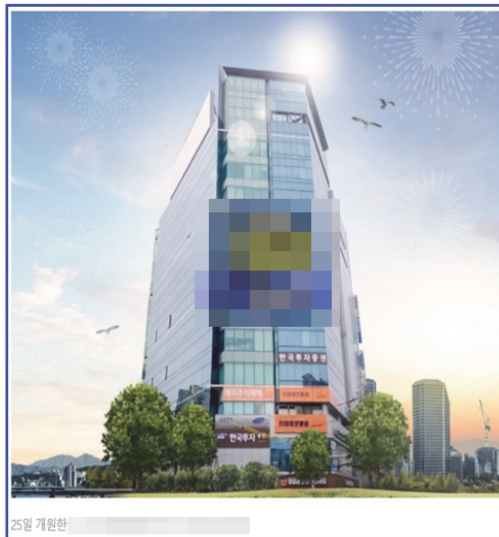
제9장 기사형광고

사례. 28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의결번호	제2022-688호
매 체 명	인터넷 한국경제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5월 25일 IT·과학면
기사제목	○○○○○○○○ 개원 “서부산권역 척추건강 책임지겠다”

1. 보도내용

「○○○○○○○○ 개원 “서부산권역 척추건강 책임지겠다”」 제하의 사진



「○○○○○○이 부산에 문을 열었다. 30년간 쌓아온 한방 비수술 치료의 노하우를 서부산 권역에도 전파하겠다는 각오다.

○○○○○○은 부산광역시 ○○○에 ○○○○○○○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다고 25일 밤

했다. (중략)

의료진은 ○○○○○○ 국제진료센터장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춘 ○○○ 병원장을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됐다. 추나요법, 신바로약침, 동작침법(MSAT) 등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한방 비수술치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퇴행성관절염, 교통사고 상해 등 척추·관절질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략)

○○○ 병원장은 “상대적으로 전문의료기관이 부족했던 서부산 지역 개원을 통해 한방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수술 척추·관절 치료를 선도할 것”이라며 “김해국제공항과 인접한 이점과 함께 해외환자들을 진료한 경험을 살려 한방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기자」

※ 원 보도에는 비식별 처리 없이 게재되었으나, 법익침해 방지를 위해 비식별 처리함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0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 등을 게재하였고,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0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제10장 기사제목

사례. 29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않거나 왜곡된 제목

의결번호	제2022-1074호
매 체 명	더데이즈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8월 17일 엔터면
기사제목	차은우 김세정 열애설 나고 부인했지만 몰래 데이트 하다가 현장 딱 걸린 상황

1. 보도내용

「차은우 김세정 열애설 나고 부인했지만 몰래 데이트 하다가 현장 딱 걸린 상황」의 제목 「걸그룹 아이오아이와 구구단 출신 배우 김세정 그리고 보이그룹 아스트로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열애설이라는 소문에 휩싸이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략) 차은우에게도 커피차를 보내주거나 같이 여러번 셀카를 찍는 등 팬들이 보기에 그냥 친한 사이를 넘어선 듯한 과도한 친목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커플 곰인형을 사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김세정과 차은우는 나란히 곰인형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후략)」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중 기사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수정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열애설에 휩싸인 두 연예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본문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왜곡된 제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0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제목

의결번호	제2022-839호
매 체 명	인터넷 세계일보
보도일 및 위치	2022년 7월 15일 사회면
기사제목	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

1. 보도내용

「비대면 수업인데 학교엔 왜? ○○대서 피 흘리며 나체로 발견된 여대생 숨져」의 제목

2. 권고사항

대상보도 제목 중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대에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이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과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권고사항과 같이 결정한다.